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(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절도·변호사법위반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

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11. 21. 2005고합510]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윤희식외 1인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조재연외 1인

【주문】

]

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800,000,000원에 처한다.

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88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,00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피고인으로부터 7,100,000,000원을 추징한다.

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, 공소외 2, 공소외 4로부터 금원을 받은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, 2000년도분, 2001년도분 각 법인세포탈의 점은 각 무죄.

[이유]

1

[이유]

]

【이유】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1